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학교폭력 조사 권한의 명확화 등〉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40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 참고자료 .....           | 8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4. 7. 5.

다. 회 부 일 : 2024. 7. 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상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br>~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br>~ ③ (현행과 같음)<br>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이 경우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u>&lt;신설&gt;</u>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현행                                                                                                                                                                                         | 개정안                                                                                                                                                                                                                                                                       |
|--------------------------------------------------------------------------------------------------------------------------------------------------------------------------------------------|---------------------------------------------------------------------------------------------------------------------------------------------------------------------------------------------------------------------------------------------------------------------------|
| <p>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⑤ (생략)</p> <p>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 <p>⑥ 제1항 및 제4항-----<br/>-----<br/>-----.</p> <p>⑦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2.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p> <p>② (현행과 같음)</p> |

최근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교사의 업무 부담과,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이나 학부모의 협박 등으로 인한 교사의 고충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음.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음.<sup>1)</sup>

대표적으로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에서 담당했는데, 「2024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23.12.29.)에 따라 이를 전국의 학교폭력제로센터<sup>2)</sup>에서 운영·관리

1) 변경된 제도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는 붙임 자료 참고.

2) ’24.5.31 기준으로 전국 모든 교육청에 176개가 설치되었으며, 전담조사관 운영·관리, 피해학생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이 담당하도록 변경하였고 이들은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 조사,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필요시 전담기구·심의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사안 조사 역량을 갖춘 이들로써 퇴직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감(장)이 임명·위촉하며 활동 기간은 1년(재위촉 가능)으로 '24.5.31. 기준 2,204명이 활동하고 있음.

### < 전담조사관 제도 개요 >

|              |                                                                                                                                                                                                                                                                                                                                                                                                                                                                                                                                                            |
|--------------|------------------------------------------------------------------------------------------------------------------------------------------------------------------------------------------------------------------------------------------------------------------------------------------------------------------------------------------------------------------------------------------------------------------------------------------------------------------------------------------------------------------------------------------------------------|
| <b>위촉 현황</b> | <b>176개 제로센터에서 2,204명 위촉·운영</b> (’24.5.31. 기준)<br>※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사안 조사 역량을 갖춘 전문가(퇴직 교원·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위촉                                                                                                                                                                                                                                                                                                                                                                                                                                                |
| <b>위촉 근거</b> | <b>「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b><br><div> <b>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b>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br/>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div><br><b>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b><br><div> <b>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b>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u>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div> |
| <b>주요 역할</b> | <b>학교폭력 피·가해 사실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필요시 전담기구·심의위원회 참석, 참고인 진술 등</b>                                                                                                                                                                                                                                                                                                                                                                                                                                                                                |

|           |                                         |
|-----------|-----------------------------------------|
| 조사관<br>신분 | 교육감(장) 위촉 전문가, 위촉기간 1년(재위촉 가능)          |
| 조사관<br>규모 | 학교 및 학생수, 학폭 발생 건수, 예산 등 고려, 시도교육청 자율결정 |
| 수당 지급     | 조사관 활동 시간 또는 사안조사 건수를 기준으로 수당 지급        |

자료: 교육부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결과 교원과 학부모 간 감정 대립 및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악성 민원이 해소되었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가 경감되었으며, 사안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높아졌다는 등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령에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이 단순히 ‘조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sup>3)</sup>, 전담조사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 등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의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현장조사·문서열람’,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출석·진술·자료제출 요청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조사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규정을 통해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11조의2제4항에서 ‘관계 직원’에게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청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담조사관은 교육청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면서 교육감(장)에 의해 위촉된 자이므로 관계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sup>4)</sup>의 ‘관계 직원’이 장학사 등 교

---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

육청 소속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므로, 법안의 취지를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조사·상담 권한을 부여할 경우 직원 신분이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가 제한될 수 있고,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목격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 요청시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안 제23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도 불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184 |

---

어야 한다.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